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단5127678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남호, 정영수

피고B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최종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이호준, 권기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치균

변론 종결2019. 8. 16.

판결 선고2019.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6,546,000원 및 그 중 1,319,726,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7.부터 2019. 10. 18.까지 연 6%, 3,336,82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2019. 10. 18.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56,546,000원 및 그 중 1,319,726,000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8%, 3,336,820,000원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신탁 사업약정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6. 1.경 천안시 동남구 E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D를 위탁자겸 수익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C를 시공사로 하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D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2016. 1.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2016. 1. 25.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25개월, 계약보증금 3,336,820,000원, 공사금액 33,368,197,180원으로 정하여 C이 시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4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은 34,048,112,022원으로 증액되었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 사건 관련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 "을"은 C이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납부에 갈음하여 계약체결 후 14일까지 다음의 보증서 등(이하 "계약보증서"라 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B공제조합, F공제조합, 업종별공제조합 등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는 "갑"에게 귀속한다. 또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액 또는 계약보증서의 보증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선급금 정산)

선급금 정산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마다 공제하기로 한다.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공급가액 누계액 / (총 공급가액 × 100%) - 기정산액

제10조(선급금의 반환청구)

① 선급금 지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선급금 잔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2. 제8조의 선급금 사용조건을 위배한 경우

제37조 ("갑"에 의한 계약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공사 착공을 지연하거나, 1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보증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의 지급

(1) C은 2016. 6.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보증채권자,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계약이행 의무를 피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3,336,820,000원, 보증기간 2016. 1. 25.부터 2018. 6. 19.까지로 된 계약보증서(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가 C에게 발급한 이 사건 계약보증서에 첨부된 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이라 한다)의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① B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5조(주계약의 해지) 보증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증금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조합의 보증책임 범위가 확정된 부분은 심사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C은 2016. 6.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보증채권자,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선급금반환의무를 피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2,860,000,000원, 보증기간 2016. 6. 22.부터 2018. 6. 19.까지로 된 선급금보증서(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가 C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선급금보증서에 첨부된 선급금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약관'이라 한다)의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B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채무(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 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2016. 6. 24. C에게 선급금 2,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1) C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C의 노임 체불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8. 1. 12.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정이 계획 대비 11.8% 이상 지연되었다.

(2) 원고는 2017. 12. 26., 2018. 1. 9., 2018. 1. 16. C에게 노임 및 자재비의 지급, 부진한 공정의 만회계획과 공사 정상화 방안의 제출을 요청하고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3) C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뒤에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2. 1.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C에게 기성금으로 합계 19,907,310,180원(실제 지급한 17,774,171,069원에 선급금 정산금 1,280,274,000원과 아래의 유보금을 합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1. 28.부터 2018. 1. 31.까지의 기성고 대금 2,425,598,737원을 C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후 해당 지급액 상당의 채권을 양도 받아 2018. 4. 16.경 C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또한 C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졌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기성고 유보액은 852,865,111원이다(다만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마. 회생절차개시

C은 2018. 4. 4.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보조참가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에서는 C과 피고보조참가인을 모두 '피고보조참가인'로 통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1)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는 1개월 이상 중단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완공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는 그 공사금액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공사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금액의 조정이 필요한데도 원고는 금액 조정 없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강요하면서 기성고에 따른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 3, 5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4조, 제11조, 제35조, 위 시행령 제6조의2를 각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이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었다거나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 3, 5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4조, 제11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 또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선급금에 관하여

(1)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 이 사건 사업약정서(갑 제1호증) 특약사항 제14조(공사도급계약 해제 또는 해지시의 처리) 제2항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의 기성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 경우 기성률은 이 약정서 제9조의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산출된 공사 기성률과 관계 없이 원고가 공사감리원 등의 협조를 얻어 별도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제49조 제1항은 "사업약정서는 이 계약과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계약과 사업약정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건설 견적 전문업체인 G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 산정을 의뢰하였는바, G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이 2016. 5. 23.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한 2018. 1.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기성물량내역서를 바탕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 32470, 32487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을 47.98%로 산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16,336,284,148원(= 34,048,112,022원 × 0.4798, 원 미만 버림)인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선급금 정산액은 이 사건 공사계약 제9조 등에 따라 2017. 9. 15.까지 1,280,274,000원이었고 미정산 선급금은 1,319,726,000원(= 2,600,000,000원 - 1,280,274,000원)이었으며, 그 다음 회차인 2017. 11. 25.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으로 원고가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였는바 별도의 선급금 정산이 없었고, 2018. 1. 31.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한 사실, 그런데 위 2017. 9. 15.까지의 선급금 정산 등을 위한 기성고율은 그 산정 방법의 차이로 위 47.98% 보다 높았는바, 원고는 2018. 3. 12. 피고에게 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기성고 비율 47.98%를 전제로 미정산 선급금 1,329,726,000원에 관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증인인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1,319,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위에서 본 이 사건 선급금보증약관 제8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2018. 3. 12.을 기준으로, 보증금 결정 후 지급 기한인 7일과, 그 이전에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결정에 필요한 기한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8일 합계 35일을 더한 2018. 4. 16.을 선급금보증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로 함이 타당하다. 위 부분을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이 사건 선급금보증서(갑 제4호증) 특기사항란에 "이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연 5.0%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약정이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이자율은 상법에 정한 연 6%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위 부분을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65.59%이므로 이에 따라 위 선금금을 정산하고 여기에 타절기성금 등을 상계하면 반환할 선급금이 남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공사의 타절 즉,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이 사건 사업약정서 특약사항 제14조 제2항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이 47.98%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1)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원고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을 피고보조참가인이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증인인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3,336,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이므로 감액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5조 제2항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도급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수급인에게 반환하거나, 계약보증서의 보증범위 감축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최종 변경계약서의 공사금액은 합계 34,048,112,022원으로 최초의 공사금액 33,368,197,180원 보다 증액된 것이나, 수급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외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참가하였는바, 피고보조참가인과 H, I은 공동수급인으로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계약금액 32,347,750,604원에, 통신공사 부분은 H이 계약금액 719,640,235원에, 소방공사 부분은 I이 계약금액 980,721,183원에 각 부담하여 이행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위 최종 공사계약서 제50조 제6항은 "공동수급인 대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며 도급인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인의 대표로서 본 계약상 피고보조참가인, H, I의 모든 권리(공사기성금 청구 포함)는 피고보조참가인만이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한다", 같은 조 제7항은 "피고보조참가인은 H 및 I의 의무를 포함(H 및 I과 연대책임)한 본 계약상 수급인들이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위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 병 제7호증의 기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감액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최종 공사금액은 34,048,112,022원이고, 최초 공사금액은 33,368,197,180원인데 계약보증금은 최초 공사금액의 약 10%인 3,336,820,000원인 점,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원금 기준 6,642,705,359원을 신고하였는바, 위 금원은 모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에서 인정된 선급금보증금 1,319,726,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아직 5,322,979,359원이나 남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36,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위에서 본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9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2018. 2. 7.을 기준으로(갑 제17호증), 보증금 결정 후 지급 기한인 7일과, 그 이전에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결정에 필요한 기한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8일 합계 35일을 더한 2018. 3. 14.을 계약보증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로 함이 타당하다. 위 부분을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이 65.59%임을 전제로 위 선급금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타절기성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약정서 특약사항 제14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위 타절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47.9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656,546,000원(= 1,319,726,000원 + 3,336,820,000원) 및 그 중 1,319,726,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7.부터 2019. 10. 18.까지 연 6%, 3,336,82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2019. 10. 18.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병태